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August 19, 2024

삼성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OECD 2024년 법인세 통계 요약

OECD에서 매년 발행하는 *Corporate Tax Statistics*는 법인세 정책 연구 및 BEPS 분석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4년 7월에 발행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율은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 법인세 수익은 분석대상 123개의 각 국가 경제에 높은 수준으로 기여하고 있음

- 명목세율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년간의 장기적인 감소 추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법인세율은 여전히 역사적 평균수치보다 낮으며, 모든 OECD 회원 국가(중앙 및 지방 정부 포함)에서의 평균 명목세율은 2000년 28.0%에서 2019년 21.7%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명목법인 소득세율은 2019년 21.7%, 2024년 21.1%로 비교적 안정화되었습니다.

- 법인세율의 안정화 추세는 R&D 투자를 위한 정부보조금의 안정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D 인센티브는 R&D에 중요한 자금 지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높은 유동성을 보유한 무형자산 투자 유치 수단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R&D에 대한 세금 보조금은 최근 몇 년 동안 안정화되었으며, 약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보조금은 R&D에 대한 EATR을 2020년에 34.8%, 2021년에 35.3%, 2022년에 34.7%, 2023년에 33.4% 감소시켰습니다.

실효 평균세율("EATR")은 감소 추세를 지속해가고 있음

-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복합 EATR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평균 복합 EATR은 2017년 21.6%에서 2023년 20.2%로 꾸준히 감소하였습니다. 이 감소 추세는 2019년 이후로 둔화되었으며, EATR은 평균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위 EATR값 또한 소폭 감소했으며, 평균 EATR은 2019년에 20.9%, 2023년에는 20.2%였으며, 중위 EATR은 2019년에 22.8%, 2023년에 22.7%였습니다.

원천회피 및 소득이전("BEPS") 활동은 투자허브에서 4년 전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

- OECD가 분석한 지표에 따르면 1인당 매출 중위값은 2017년 대비 13.1% 감소하였고, 직원 1인당 이익 중위값은 1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총 매출대비 특수관계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은 1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BEPS 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투자 허브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BEPS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4년 국내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E") 모델 규정관련 한국 세제개정(안)

202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 GloBE 모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OECD 모델 규정/해설 및

이전에 발표된 행정 지침의 항목을 다루기 위한 추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세제개정안은 올해 말부터 도입될 시행령에 대한 세부 지침을 연기하면서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세이프하버, 영구적 세이프하버, GloBE 손실 선택권 등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새로운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 모델 규정/해설과 일치하도록 고정 사업장, 부분 소유 중간 모회사, 과세상 투과단체(Flow-through entity)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UTPR에 따른 추가 과세 배분 방법, 최소허용기준 등 기존 규정에 대한 보완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픽	상세내용
UTPR에 따른 추가 과세의 배분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원칙<ol style="list-style-type: none">법적 배분: 모회사의 직접 또는 간접 소유에 따른 배분지정된 배분: 구성 법인들이 합의하고 보고 구성 법인이 지정한 배분<ul style="list-style-type: none">다만, 이전 연도의 추가 과세분이 미납되었을 경우, 배분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짐.<ol style="list-style-type: none">최종 모회사가 한국에 위치한 경우: 최종 모회사에 배분됨최종 모회사가 한국에 위치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배분 방법이 적용됨
최소허용기준 예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최소허용기준: 구성 요소의 평균 수익이 최근 3개 회계연도 동안 1,000만 유로 미만이고, 전 세계 최소 세금 소득 또는 손실의 평균이 100만 유로의 최소 기준 미만인 경우에 적용예외: 보고 후 보고서 조정(국가별 초기에 제외 기준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 등의 이유로 제외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세제개정안은 9월에 국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될 예정이며, 연말까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335 (2024.06.20)

제목: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액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함에도 중국법인 업체의 경우 합리적인 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정상가격을 토대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함 (일부국패)

[처분 경위]

- 원고는 폴리프로필렌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XX 그룹소속 계열회사인 XX 케미칼 주식회사와 다국적 석유화학 그룹 A(이하'A') 소속 계열회사인 B (이하 'B')가 각각 지분 50%씩을 보유하고 있다.
- 한편, A는 그 계열회사로 C (이하'C법인'), D (이하'D법인'), E (이하'E 법인')를 두고 있다. C법인과 D법인은 중국 지역법인이고, E법인은 태국 지역법인이다.
- C법인과 D법인의 경우 A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인 F가 그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E법인의 경우 B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인 G가 그 지분 9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C법인, D 법인 및 E법인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8호 나목에 해당하는 국외특수관계에 해당한다(이하 C법인과 D법인, E법인을 총칭하여 '이 사건 국외특수관계법인들').
- 원고는 국내에서 생산한 폴리프로필렌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의 해외판매와 관련하여 A의 계열회사인 H과 수출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를 통해 특수관계 없는 제3자 또는 이 사건 국외특수관계법인들에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다.
- 피고 XX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당초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 XXX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이 사건 국외특수관계법인들에게 구 국조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 XXX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법인세 과세표준을 합계 X원 증액하여 법인세 합계 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XX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날 이 사건 국외특수관계법인들을 소득자로 하여 위 X원을 임시유보처분 통지하였다가 원고에게 위 X원이 이 사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고에게 반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X원을 이 사건 국외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여 이전소득금액 합계 X 원의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하였다.

-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비교대상거래를 다시 산정하고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이전소득 금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 피고 XX지방국세청장은 조세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전가격 재조사(이하 '재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세 합계 X원을 감액하고, 이전소득금액 합계 X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와 이 사건 국외특수관계법인들 간 거래의 거래가격은 실질적으로 구 국조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들인 XX 케미칼 주식회사와 B사이에 합의된 가격이므로 정상가격에 해당한다.
- 피고 XX지방국세청장은 비교대상거래 선정 시 거래규모(매출액)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비교대상거래 선정기준도 합리적이지 않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은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의 범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XX지방국세청장은 원고와 E법인 거래에 대해 비교대상거래를 1개만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판단]

쟁점 ①: 원고와 이 사건 국외특수관계법인들 간 거래의 거래가격이 그 자체로 구 국조법상 정상가격인지 여부

- 구 국조법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이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법인인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상가격은 구 국조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이다. 그러므로 원고와 이 사건 국외특수관계법인들간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원고의 주주회사 사이에서 합의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구 국조법에서 정한 정상가격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 ②: 원고와 이 사건 국외특수관계법인들 간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1) 20XX 사업연도 원고와 XX 지역 특수관계법인인 C 법인, D 법인 간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관련
-

- 피고 XX지방국세청장은 원고와 이 사건 국외특수관계법인들 간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계산을 위하여 구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원가가산방법을 선택하였는 바, 선택한 원가가산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구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국외특수관계법인들 간 거래와 비교대상이 될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아야 하는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피고 XX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 당시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는 3가지 기준을 순차로 적용하여 원고의 C 법인, D 법인에 대한 거래와 비교할 거래를 선택하였는데, 선택된 X개 업체의 평균매출액은 원고의 C 법인에 대한 매출액, D 법인에 대한 매출액과 차이가 상당히 커서 C 법인, D 법인에 대한 거래와 원가가산율이 비슷한 매출액 규모라고 볼 수 없음에도 매출액 규모에 따른 원가가산율의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지 않았다.
 -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 XX 당시 결과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최소 X원 이상 되는 거래가 비교대상거래로 선택됨에 따라 매출액 규모가 작아 비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업체들이 모두 배제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매출액 규모 X원 미만의 거래가 비교대상거래로 선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매출액 규모의 차이가 원가가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원고가 20XX 사업연도에 XX 지역에서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해 이 사건 제품을 X원 이상 판매한 거래의 원가가산율 하위 사분위 값이 X%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C 법인에 대한 거래의 원가가산율은 X%, 원고의 D 법인에 대한 원가가산율은 X%로서 원고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X원 이상 거래의 정상가격 범위 안에 존재하므로, 원고의 C 법인, D 법인에 대한 거래가격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2) 원고와 XX 지역 특수관계법인인 E 법인 간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관련
- [별지 2] 기재와 같은 XX 지역 20XX 사업연도 비교대상 업체(X개)와 20XX 사업연도 비교대상업체(X개)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XX지역 업체들과는 달리 매출액 규모가 원가가산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 XX지방국세청장은 원고와 E 법인 간 거래와 비교할 거래를 선정하기 위하여 2가지 기준④ 거래의 연속성(조사대상기간인 20XX 년부터 20XX년까지 3개년

연속 거래업체인지 여부), ② 가격 조건(E 법인의 거래가 formula 거래이므로 formula거래인지 여부)]을 순차로 적용하였는데, 위와 같은 기준은 구 국조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의 분석요소(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계약 조건 등)로서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XX지방국세청장이 선택한 비교대상거래가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쟁점 ③: 원고와 법인 거래에 대해 비교대상거래를 1개만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당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와 거래조건이 같거나 조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사한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사례가 있으면 그 거래사례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별도로 다른 자료를 추가하여 정상가격 범위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등 참조).
- 피고 XX지방국세청장이 원고와 E 법인 간 거래의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한 거래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거래의 연속성이나 가격 조건에서 유사한 거래이므로 그 거래사례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다른 자료를 추가하여 정상가격범위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 XX지방국세청장이 원고와 XX 지역 특수관계법인인 C 법인, D법인 간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계산하기 위하여 선정한 비교대상거래 X건은 비교가능성이 낮으므로 이를 비교대상거래로 계산한 정상가격을 토대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 XX지방국세청장이 원고와 XX지역 특수관계법인인 E 법인 간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계산하기 위하여 선정한 비교대상거래 1건은 비교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고, E 법인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별도로 다른 자료를 추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위 비교대상거래로 계산한 정상가격을 토대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XXX세무서장에 대한 20XX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원고의 피고 XX지방국세청장에 대한 20XX년 귀속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산업부·관세청, '전략물자 불법수출 관리' 협력 강화

1. 개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불법 수출 단속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8월부터 관세청 사무관급 인력 1명을 파견 받아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임

2. 내용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 통제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행정처분 하는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다만,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수출 허가 업무를, 관세청은 수출 통관 업무를 각각 담당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번 인력 파견이 이루어짐

산업부는 "최근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돼 수출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 시도가 지속 증가해 긴밀한 협업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협업 강화를 통해 양 부처가 전략물자 수출의 전 주기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활용해 효과적인 불법 수출 단속 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산업부는 이달 말 시행을 목표로 지난 6월 28일 대 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고, 금속절삭가공 기계, 공작기계 부품, 광학기기 부품, 센서 등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새롭게 통제 대상에 추가되면서 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될 예정임

3. 시사점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기존의 무기 관련 품목뿐만 아니라 일반산업용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통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 등 공조국에서 對러시아 우회수출 중점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 등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한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산업 분야에 속하는 기업들은 미래 사업 계획 수립 시 주요국들의 수출통제 현황을 면밀히 살펴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유예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1. 개요

관세청은 지난 6월 26일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 본부에서 영국 관세당국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함. 이번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영국향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2. 내용

- 고광호 관세청장은 지난 6월 26일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 본부에서 캐롤 브리스토우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진행하며, 양 관세당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을 체결했음.
 - AEO는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을 의미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시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동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영국에 수출하는 우리 AEO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번 AEO MRA는 2023년 11월 한-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을 기반으로 추진되었음.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 23개국과 체결 중이며, 영국은 24번째 체결국임. 영국 수출 중 약 64%에
-

해당하는 38.1억 달러를 AEO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영국 AEO MRA 체결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고 청장과 브리스토우 실장은 AEO MRA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상호 협력할 것에 합의했음. 또한, 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을 활용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 공조 등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음.

3. 시사점

한-영국 관세당국 회의에서 체결된 AEO MRA는 한국 수출 기업들의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국내 수출 기업들은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 절차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는 영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중국-세르비아 FTA, 7월 1일부 정식 발효

1. 개요

중국-세르비아 FTA 발효식이 7월 1일 세르비아의 제2도시 노비사드에서 개최됨. 중-세르비아 FTA는 2023년 10월 17일 체결되었으며,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2024년 7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됨. 중-세르비아 FTA가 발효됨에 따라 중국과 세르비아 양국은 상호 90% 세목에 대해 관세를 점차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며, 그 중 60% 이상에 대해서는 발효일로부터 즉시 관세를 철폐하게 됨.

2. 중-세르비아 FTA 발효

(1) 의의

- 세르비아는 동유럽의 대표적인 친중 국가임.
 - 중-세르비아 FTA는 2023년 10월 17일 체결되었으며, 양국의 비준 절차를 거쳐 2024년 7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됨.
 - FTA 발효에 따라 양국은 90%의 세목에 부과되는 상호 관세를 단계적으로
-

철폐하게 되었으며, 그 중 60% 이상의 세목은 협정 발효 당일부터 즉시 철폐됨.

(2) 협정 포함 내용

- 중-세르비아 협정에는 원산지 규칙, 세관 절차 및 무역 편리화, 보건 및 식물위생 조치, 기술 무역 장벽, 무역 구제, 분쟁 해결, 지적권 보호, 투자 협력, 경쟁 등 많은 분야에서 제도를 마련함.
- 이에 따라 양국의 기업이 더 편리하고 투명하며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과 세르비아 양국은 FTA를 통해 경제 무역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향후 운명 공동체 구축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계획임.

3. 시사점

금번 중국-세르비아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 교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세르비아는 발칸반도에 위치한 국가로, 현재 EU 국가는 아니지만 EU 가입 후보국에 해당됨. 이는 중국이 중·동부 유럽국가와 체결한 첫번째 FTA로, 향후 중국이 동유럽 시장에 접근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Key Contacts

삼성KPMG TAX6 본부



강길원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